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(한기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445

발의연월일: 2025. 1. 23.

발 의 자:한기호·김승수·김성원

강선영 · 김선교 · 유용원

신성범 • 권성동 • 김정재

성일종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에서는 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제대 후 직업교육훈련, 창업상담, 창업교육 등 다양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, 헌법 및 「병역법」 등에따라 병역을 이행한 대다수의 병역이행자에 대해서는 「병역법」에서병역 이행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금지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, 학업이나 취업을 중단하고 병역을 이행한 다수의 청년들은 제대 후 경제적 고충과 사회복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군복 무에 따라 발생한 기회비용을 보전하고,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적절 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여 병역 이행이 존중받는 사 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국가보훈부장관은 병역이행자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함(안 제5조).
- 나. 병역이행자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국 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병역이행자 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함 (안 제6조).
- 다.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(안 제7조).
- 라. 병역이행자가 그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거나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전역지원금을 지급함(안 제9조).
- 마. 병역을 이행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병역이행자에 대해 직업교육 훈련, 창업상담, 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).
- 바. 병역이행자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그 복무기간 만큼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자 함(안 제11조).
- 사. 병역을 이행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병역이행자 등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시험 등에 응시하려 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).
- 아. 병역이행자 등이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점수를 가산하고자 함(안 제13조).

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여 국토방 위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병역이행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 고 병역 이행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병역이행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「병역법」에 따른 군복무(1년 이상 복무한 경우를 말한다)를 마치고 전역(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를 포함한다. 이하같다)한 사람을 말한다.
 - 1. 「병역법」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
 - 2. 「병역법」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
 - 3. 「병역법」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
 - 4. 「병역법」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
- 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병역이행자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.
-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병역 이행이 사회 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병역이행자의 사회 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병역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, 제6조에 따른 병역이행자 지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병역이행자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
 - 2. 병역이행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 - 3. 병역이행자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병역이행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,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 -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세우고 추 진하여야 한다.
 -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· 조정하여 제6조에 따른 병역이행자 지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 - 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

범위 ·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6조(병역이행자 지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병역이행자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병역이행자 지원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조정한다.
 - 1.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
 - 2.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
 - 3. 병역이행자 지원과 관련된 각종 조사, 연구 및 정책의 분석·평 가에 관한 사항
 - 4. 병역이행자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 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
 - 2. 국방·경제·교육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
 - ④ 심의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심의위원회 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

다.

- ⑤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지원 신청 등) ① 병역이행자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병역이행 자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.
 - 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지원은 그러하지아니하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병역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) 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.
 - ② 병역이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멸된다.
 - 1. 사망한 경우

- 2. 국적을 상실한 경우
-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리가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지원받을 권리가 소멸한다.
- 제9조(전역지원금의 지급 등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병역이행자가 그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거나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전역지원금을 지급 한다.
 - ② 병역이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역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 - 1. 복무 중의 사유(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)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
 - 2. 「군인사법」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의하여 현역 복무 부적합으로 전역한 경우
 -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역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역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역지원금 지급을 받은 경우
 - 2. 전역지원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
 - ④ 제1항에 따른 전역지원금의 지급액, 지급방법 및 절차, 제3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0조(취업지원) ① 국가는 병역을 이행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병역이행자에 대하여 병역 이행에 따른 취업준비 지연 등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, 창업상담, 창업교육 등의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의 면제) 병역이행자가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그 복무기간만큼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.
- 제12조(수수료의 감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 인과 병역을 이행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병역이행자에 대하여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채용시험,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시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비율, 감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채용 시의 우대 등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가능 횟수 및 기간 동안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다음 각 호

- 의 구분에 따른 범위의 점수를 가산한다. 이 경우 공개채용 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 시험·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.
- 1. 제2호 외의 병역이행자: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1000분의 10
- 2.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병역이행자로서 5년 이하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·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: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1000분의 15
- 3.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기복무 제대군인: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1000분의 20
- 4.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: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1000분의 30
- 제14조(자료의 제공요청 등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5조(위임 및 위탁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

-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 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16조(벌칙) ①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·제 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.
 -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전역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9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학자금대출 이자 면제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는 병역이행자부터 적용한다.
- 제4조(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.